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26.

발의자 : 민홍철 · 황주홍 · 주승용
윤후덕 · 서형수 · 이언주
이개호 · 정성호 · 최도자
윤영일 · 설훈 · 윤관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과 관련하여,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, 부칙 특례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, 감정평가,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로 하

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유지하되, 부칙 특례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, 기업 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).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후단
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“201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